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5.11.20) 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해당 조문 전부 개정

※ 유효기간 연장 : 기존 2015년 11월 23일 ⇒ 변경 2020년 11월 23일

(안 제9조제7호·제8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신설(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5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구미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
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 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구미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미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2.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③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에 미치는 영향 및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구미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협회의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 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5항에 관하여 시장 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구 미시 조례 제856호(2011.1. 5.) 부칙 제2조에 따라 제9조 제7호 및 제8호는 2015년 11 월 23일까지 유효함] 8의2. 9. (생략)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구미시 유통산업 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 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협회의의 업무)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5항에 관하여 시장 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8의2. 9. (현행과 같음)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구미시 유통산업 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 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 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구미시 조례 제856호 (2011.1.5.)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는 2015년 11월 23일 까지 유효함]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 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구미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 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 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구미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3. 구미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
치는 파급효과[구미시 조례
제856호(2011.1.5.) 부칙 제2
조에 따라 이 조는 2015년 11
월 23일까지 유효함]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
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
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
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의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
증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시

효과

3. 구미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
치는 파급효과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
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
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
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
증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시
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상
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

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2.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③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에 미치는 영향 및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회

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2.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③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에 미치는 영향 및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삭제 [구미시 조례 제856호 (2011.1.5.)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구미시 조례 제856호(2011.1.5.)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14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구미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구미시 조례 제856호(2011.1.5.)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구미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 제8조제4항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제13조의3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15.11.20.]

소관 실 · 과		과학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백 인 엽
	담 당	유 경 숙
	담 당 자	김 지 훈 (480-6183)